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현장공감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FOCUS는 빠른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현안 및 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복지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복지이슈 FOCUS

제 18 호
(2024-18)

발행일 : 2024. 09 04
발행인 : 대표이사 원미정
발행처 : 경기복지재단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031-267-9309 F. 031-898-5935 E. hykim@ggwf.or.kr

통합돌봄을 위한 누구나 돌봄 발전 전략

목차

Ⅰ. 지역사회돌봄 과정
Ⅱ. 누구나 돌봄 발전 전략
Ⅲ. 정책제언

기존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누구나 돌봄 사업 추진

▸ 경기도는 24년 1월부터 누구나 돌봄사업과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제고 도모
- 누구나돌봄사업은 15개 시군에서 7월까지 7대 서비스를 3,939건을 제공하였고,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6개 의료원과 3개 민간병원에서 추진 중
- 틈새돌봄의 한계로 인해 주거와 의료 등 더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되지 못하고,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각지대 발생 우려

통합돌봄으로 발전하기 위해 '누구나 집으로(路) 온(溫) 돌봄' 전략 추진

▸ 긴급·일시적 서비스 종료 후 타 돌봄사업과 연계,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도민이 살던 집에서 온기 넘치고 온전(whole)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전략 1. 급성기 환자 퇴원 후 추가 치료/관리를 위한 '전환기 치료서비스'
- 전략 1-❶ : 병원 중심 전환기 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
- 전략 1-❷ : 단기입주형회복주택(readiness to independent life) 운영
- 전략 1-❸ : 지역사회기반 '통합재가서비스지원센터' 운영

▸ 전략 2. 돌봄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 연속성 제고
- 전략 2-❶ : 경기도 민간사례관리사를 통합돌봄사례관리사 인력으로 전환
- 전략 2-❷ : 통합지원으로 충족되지 않은 서비스 보완

▸ 전략 3. 인-앤-아웃 발굴체계 강화
- 전략 3-❶(인 바운드 전략) : 돌봄수요 파악 및 실적자료 축적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전략 3-❷(아웃리치 전략) : 의무방문을 추진하여 발굴주의로 전환

정책 제언

▸ 누구나돌봄 업무 절차 간소화 : 조사 도구 통일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시행에 대비
-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과 필요인력 산출하고, 중앙정부에 건의

36
9 772982 554000
ISSN 2982-5547

경기복지재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연구책임 |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조해진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Ⅰ. 지역사회돌봄 과정

전 생애에 걸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소한 생활 속 돌봄까지 포함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

인간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정부의 관련 정책은 다양

▸ 사회적 위험의 양태는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위기도 지속 존재(감염병 등)

- 태어나면서부터 삶을 마감할 때까지 누군가를 부양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최근 돌봄이 필요한 인구의 폭발적 증가
  - 2025년 노인인구 비율이 20.3%(초고령사회진입), 2030년 베이비부머세대가 75세 이상 후기 고령기 진입 전망되며, 경기도는 '18년 11.9%, '22년 14.7%, '28년 20% 전망
  - 1인 가구 증가도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데, 2~30대는 직장, 4~50대는 이혼 등이 주된 이유이며, 경기도는 30대 이하, 4~50대 높은 비중을 차지

〈그림 1〉 돌봄 필요성과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

자료 : 민소영(2023). 수원형지역기반 통합돌봄생태계 구축방안 발표 자료 발췌

자료 : 양난주(2023). "돌봄사회를위한 지역사회보장의 과제". 경기 360도 돌봄 정책토론회 자료(2023. 12.7)

▸ 돌봄은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개념 정의는 다양

- 과거 돌봄은 신체지원에 초점을 두었으나 고독한 사람들간 상호작용을 포함한 심리 및 정신건강까지 포괄하며, 최근에는 사소하지만 생활 속 서비스까지 포함
  - 돌봄은 모든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인간의 삶에서 중요하고 심오한 부분
  - 돌봄은 다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일
  - 돌봄은 사람을 키우고, 먹이고 간호하고, 돕고 사랑하는 일
  -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한 사회적 실천
  -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해결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고 싶어 하는 것

▸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서비스는 연령별·서비스 영역별로 다양하여 각 연령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 중심으로 제공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존재

- 연령별로 서비스 영역별로 제공되는 구체적 내용은 부록을 참고하고, 특징을 요약하면,
  - 영유아(~만 6세) :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식사 등 일상생활유지 및 보호 서비스 제공
  - 학령기(만 6세~18세) : 학교를 통해 보호와 교육서비스 제공
  - 청년기(만 19세~34세) : 가족돌봄지원에 초점, 정신건강, 여가, 사회적 관계 서비스 제공
  - 중장년기(35세~64세) : 안부 등 생존 확인을 위한 기본서비스 보완
  - 노년기(65세~) : 거의 모든 서비스를 총 망라

Ⅰ. 지역사회돌봄 과정

돌봄은 보건과 복지, 주거가 필수적으로 연계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시범사업에서도 실현하지 못하는 어려움 봉착

- 노인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의 경우 일상 생활과 관련한 모든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특히 사소해서 구매하기 어렵거나 개별적인 경우 제공하지 못하며,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사각지대' 문제 직면

- 또한 시간 격차 발생하여 긴급성과 민감성이 저하되며, 서비스 시간이 불충분하며[1]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인프라(연천, 가평 등)가 부족하고 복지와 보건, 주거서비스 간 연계 체계 부재[2]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인원은 5071명에 달하고, 2024년 상반기에도 1805명으로 나타나 시간 격차의 문제 현실화

  • 또한 3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마쳐야 하지만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했는데, 2023년 13만651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76만6391건)의 17.8%에 달했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다인 18만8359건이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치지 못함[3]

돌봄은 보건과 복지, 그리고 주거서비스가 필수 요소

▸ 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은 다양한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집과 동네)에서, 편리한 방식(가정방문, 시설방문)으로 이용하는 체계

- 본인의 독립적 생활, 가족의 돌봄 부담 감소를 목표로 국가/사회의 책임성을 기반으로 2020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23년부터 노인과 의료에 특화된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21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

  • 보건복지부가 2019년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핵심 사업은 '퇴원지원, 주거지원, 보건의료와 요양 등 서비스 연계' 등이며, 이동지원과 영양식 개선, 스마트 홈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내용이 그대로 노인 의료·돌봄통합지원 사업으로 연계

-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보건, 복지, 주거를 3요소로 하여 건강 상태에 따라 지역사회와 시설 간 순환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주거 마련 등 현실적 어려움 봉착

〈그림 2〉 돌봄, 보건, 주거의 순환적 돌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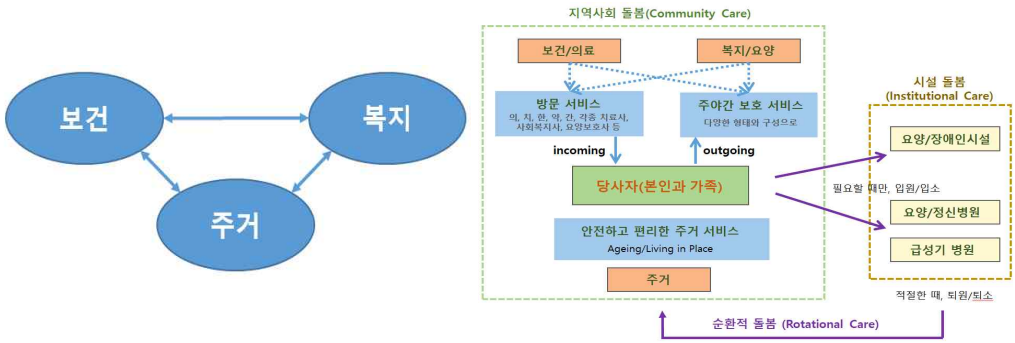

자료 : 김용익(2024). "전국민 돌봄보장을 위한 공공병원의 필요성", 부천시 "건강한 도시, 행복한 시민" 발표 자료(24.6.25)

1) 재가요양서비스 시간은 1일 3시간~4시간에 불과하며, 중증 장애인 또는 와상상태인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지만 관련 서비스 부족
2) 민소영(2023). "수원형 지역기반 통합돌봄생태계 구축방안" 발표 자료
3) 매일경제 기사(24. 8.1.). '국힘 김미애 "노인장기요양 심사 중 사망자 작년만 5000명"' https://m.mk.co.kr/news/politics/11082670?kakao_from=mainnews

Ⅰ. 지역사회돌봄 과정

누구나 돌봄사업은 7개월 간 3,939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하는 틈새돌봄 사업을 추진

경기도는 기존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사업 추진

▶ 경기도는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2024년 1월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하는 '누구나 돌봄'을 추진

-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 상황에 놓은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 제고 도모

- 지난 1월 시흥 등 6개 시에서 우선 시작돼 5월 부천을 마지막으로 '24년 15개 시군[4]에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 7개월 간 3,939건의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지며, 기본형은 5개 분야,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 외에 2개 분야를 추가한 7개 분야 서비스를 제공

〈표 1〉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 내용

구분	서비스	서비스 내용	이용한도
기본형	생활돌봄	• 신체/가사활동 지원 : 세면 도움, 식사 준비, 설거지 등 지원	1일 4시간 (연 최대 15일)
	동행돌봄	• 병원/생활업무 동행 : 병원, 관공서, 은행 등 동행	
	주거안전	• 소모품 교체/부분 수리 : 형광등, 수도시설, 방충망, 못박기 등	
	식사지원	• 일반식, 환자식, 죽식 제공	1일 1~3식 (연 최대 15일)
	일시보호	•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 지원	연 최대 15일
확대형	재활돌봄	• 운동재활 및 일상생활 수행 훈련 등	1주 1~2회 (연 최대 10회)
	심리상담	• 심리·정서적인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지원	1주 1~2회 (연 최대 10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현장방문→돌봄계획수립→서비스 제공→사후관리 등의 단계를 거치며, 1인 연간 150만 원이 상한이며, 60일 이내 종결 권고

▶ 거동이 불편한 도민 누구나 재택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으로 방문하여 진료, 처방, 상담 등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누구나 방문의료) 사업 추진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돌봄의료팀이 서비스 신청자의 집을 방문해 의료와 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월부터 6개 의료원이, 7월부터 공익적 민간의료원 3개 등 9개 의료기관[5]이 서비스 제공

  • 9개 시에 거주하는 돌봄의료 희망자는 지역 서비스 병원에 전화로 신청하면 간단한 상담과 건강평가를 거쳐 돌봄의료팀이 집을 방문하여 진찰, 처방, 활력징후 측정, 각종 검사, 영양 교육 및 상담, 생활습관 관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와 연계를 안내

-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과 사업방식 등은 유사하나 장기요양대상자에 한정하지 않고 거동불편 도민 모두를 대상자로 하고, 급여비용은 보조금으로 지급

  •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외래 법정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본담금 발생

4) 기본형은 용인, 평택, 화성, 부천,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등 9곳이며,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등 6곳은 확대형으로 추진

5) 6개 경기도의료원은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이고, 3개 공익적 민간의료기관은 화성 통탄시티병원, 시흥 신천연합병원, 고양 일산복음병원 등 9개 의료기관임

Ⅰ. 지역사회돌봄 과정

필수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틈새 및 긴급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대증적(對症的) 돌봄이 아닌 본질적 문제 해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 필요

▸ 누구나 돌봄사업은 틈새 및 긴급돌봄의 성격으로 타 돌봄사업과의 연속적 접근이 어렵고, 보건, 복지, 주거 등 돌봄의 필수 3가지 서비스의 내용은 피상적

- 중앙정부의 노인 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이나 일상돌봄 및 긴급돌봄서비스,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별도 돌봄사업 등과 연계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통합적 접근 곤란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복지직1, 간호직1)을 돌봄매니저로 지정하고, 접수, 방문, 서비스 계획 수립, 종결까지 모든 단계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고, 복합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타 서비스와 연계 등을 기대하기 곤란
- 지원 대상자 상당수는 퇴원환자이지만 돌봐줄 가족 등의 부재로 집으로 곧장 가기 어려운 환자나 말기암 환자와 같이 24시간 및 연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데, 보건과 연계되지 못한 이유 때문
  - 예를 들면, 누구나 돌봄에서 제공하는 주거안전은 소모품 교체 등 주택의 물리적 환경 개선서비스 수준으로 '머물러 살 곳'을 위한 주거 관련 본질적 서비스는 없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원주택'[6]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갖고 있지 못함
  -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재활훈련이나 작업치료, 물리치료와 같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집에서의 서비스 수혜가 어려운 상황이 많음

▸ 신청해야 방문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소외된 시민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 발굴체계로 전환 필요

- 누구나돌봄과 누구나 방문의료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거나 지역기관 의뢰를 해야 사업이 시작
  - 현재의 국가 돌봄 체계는 연령·소득 등 조건에 맞는 특정 대상자만 지원하는 '선별주의'와 스스로 신청해야만 지원하는 '신청주의'를 채택해 필연적으로 소외된 시민이 발생
- 돌봄이 필요하거나 거동이 불편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사업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계층을 위해 적극적 발굴체계 보완이 필요

〈그림 3〉 누구나 돌봄과 누구나 방문의료 서비스 절차

출처: 경기도(2024). '누구나 돌봄'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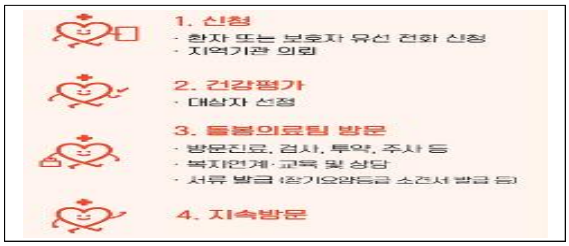

출처: 경기도(2024).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홍보물

▸ 틈새 및 긴급돌봄으로서의 유용성에서 더 나아가 통합돌봄의 필수 요소를 보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 시행(2026)에 대비

- 의료와 주거, 돌봄이 연계되고, 일상의 소소한 서비스도 제공되며, 정해진 제공 시간이 종료되면 다른 서비스로 연계되어 돌봄 제공이 연속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완

6) 경기도는 오는 2028년까지 신체·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위한 '지원주택' 410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주택은 장애인·노인 등 주거취약 입주민에게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도 연계해주는 임대주택을 의미하여 올해는 안산시에 장애인자립주택(장애인지원주택) 5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II. 누구나 돌봄 발전 전략

주거와 의료가 연계되고 누구나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전한 돌봄서비스를 집에서 받는 전달체계 개편(안) 제시

주거와 의료, 복지를 연계한 연속적 돌봄체계 '누구나 집으로(路) 온(溫) 돌봄' 구축[7]

▸ 돌봄의 필수 요소인 주거와 의료가 연계되고,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창의적 돌봄서비스를 추가, 연속적 체계를 갖춰 도민 누구나 스스로 독립적 생활 도모

▸ 긴급·일시적 서비스 종료 후 타 돌봄사업과 연계,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도민이 살던 집에서 온기 넘치고 온전(whole)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기존 누구나 돌봄 사업에 주거와 의료서비스를 추가,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돌봄의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서비스를 온전히 제공
- 민간복지시설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부터 서비스 종결까지 모든 단계를 담당하는 부담을 줄이고, '의무방문'하여 누구나 서비스를 받도록
- 서비스 이용 기한이나 이용 횟수, 금액 등이 정해진 일회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돌봄사례관리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 연계
- 개별적이고 소소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돌봄수요는 플랫폼을 통해 이웃 간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제공된 돌봄서비스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전달체계(路) 개편

〈그림 4〉 누구나 돌봄 전달체계 개편 전과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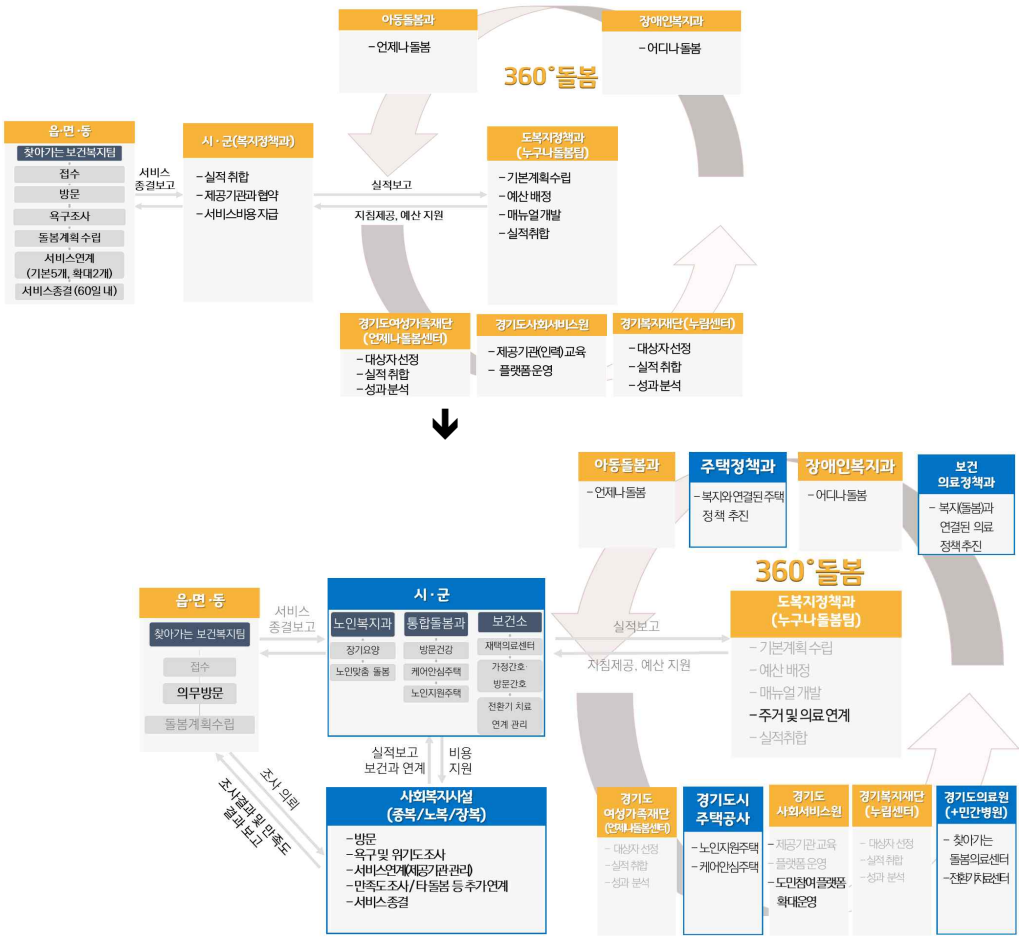

주 : 피린색은 전달체계 개편 이후 내용

7) 누구나 돌봄 발전 전략은 경기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회경기복지포럼'에서 3차례 발표 및 토론, 담당자 의견수렴을 토대로 작성됨

II. 누구나 돌봄 발전 전략

돌봄과 치료가 동시에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병원중심모형과 지역사회중심모형으로 구분하여 3개 사업 추진

전략 1: 급성기 환자 퇴원 후 추가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환기 치료서비스' 제공[8)]

▶ 서비스대상자 중 상당수는 건강(의료)문제와 복지(돌봄)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

- 가정 등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복합만성질환관리, 진료와 간호가 필요한 대상자는 2019년 기준 전국적으로 58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그림 5〉 돌봄과 치료가 동시에 필요한 지역사회 대상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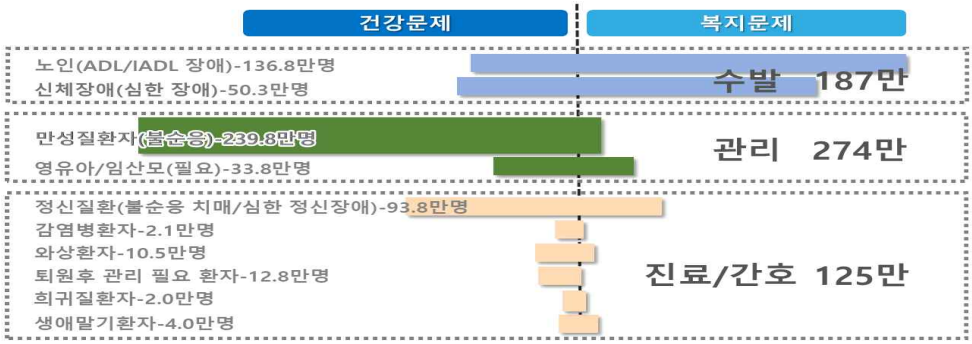

자료 : 김용익(2024). "전국민 돌봄보장을 위한 공공병원의 필요성". 「건강한 도시, 행복한 시민」" 발표 자료(24.6.25)

- 환자(또는 돌봄대상자)가 서로 다른 장소 혹은 서비스 사이를 이동할 때, 보건의료의 조정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일련의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전환기 서비스(Transition Care Service)' 제공
  - 급성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해당 질환을 치료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치료 및 관리를 통해 입원 전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전환기(회복기)서비스 제공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 11조 퇴원환자 등의 연계)에도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가 퇴원 또는 퇴소할 경우 지역사회에서 통합지원을 받도록 명시
-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연계되지만 제공되는 서비스 중점 부문에 따라 병원중심모형과 지역사회 중재모형으로 구분[9)]
  - 병원중심 모형은 환자가 퇴원한 후 병원 이후에 의료적 중재와 더불어 지역사회 및 가정 내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델
  - 지역사회 중재모형은 지역사회 병원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1차의료 및 커뮤니티 케어 체계와 연계한 노인건강평가와 이에 기반한 의료중재 및 지역사회와 가정 내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 지원이 결합되는 형태
- 각 모형에 따른 사업과 시설을 구분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6〉 전환기 서비스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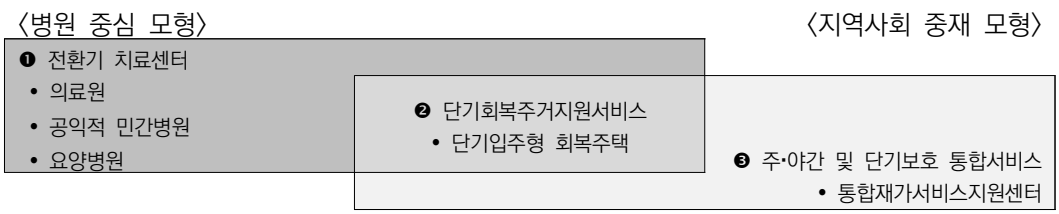

8) 전환기 치료서비스는 임승권안성의료원장, 홍승권신천연합병원이사장, 경기도보건의료정책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것임
9) 백상숙(2018). 「한국 고령 환자 전환기 의료 관리체계 개선 방안: 미국, 호주, 비교법 제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II. 누구나 돌봄 발전 전략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가 집으로 바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 의료원 등을 통해 잔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환기 치료센터' 설치 추진

▸ 전략 1-❶: 병원 중심 전환기 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

- (개요)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 중간단계로 ①의료원, ②민간병원, ③요양병원[10] 등에서 1주일~3개월[11] 동안 급성기 질환 추가 치료 및 재활 치료를 통해 입원 전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서비스
- (대상자) 급성기 치료를 마쳤지만 바로 집에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잔여 치료가 있는 사람, 돌봐줄 가족 부재, 일상생활 곤란 등)에 놓인 환자

> ① 수원에 거주하는 A씨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암수술을 받았으나 잔여 치료가 남아 있는 경우
> ② 시흥에 거주하는 B씨는 골절수술을 받고 퇴원을 요청받았으나 집에는 돌봐줄 가족이 없음
> ③ 고양에 거주하는 C씨는 뇌졸중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몸의 다른 기능이 나빠져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서비스) 급성기 입원만큼은 아니지만 연속된 비급성기 의료(재활 중심, 다발성 통증 등)와 주거(일정기간 거주), 돌봄서비스를 제공
- (방식) 경기도(의료원)는 상급종합병원과 전환기치료서비스에 대해 업무 협약 → 참여희망 민간 및 요양병원 선발 →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상태와 욕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의료원 ②민간병원 ③요양병원 중 한 곳으로 전원 → 전환기 치료센터에서 회복서비스 제공(최장 3개월) → 집으로 복귀
  - 업무 협약 시 i)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받은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언제든 회송할 수 있어야 하며 ii) 요양병원의 경우 장기입원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기간을 가능한 짧게 설정하여 장기입원 유인 차단
  -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도내 민간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중 사업 참여 희망 병원 선발하여 전환기 치료센터(약 20병상) 설치하고 최장 3개월의 회복서비스 제공
  - 상급종합병원은 환자 상태와 욕구 등을 고려하여 3개 의료기관 중 한 곳으로 전원을 결정하며, 전원기관과 긴밀한 연계 체계 구축, 환자 상태 악화 시 즉시 회송
  - 요양병원은 '죽을 때까지 모시는 곳'이라는 인식을 넘어 '치료'와 '기능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미지 전환 가능. 다만, 그동안의 서비스 경험을 토대로 말기암환자 대상 호스피스 서비스 특화도 고려 가능
- (전달체계 및 역할)

주체	역할
경기도	전환기 치료서비스 사업 계획 수립, 상급의료기관과 사업 MOU 체결, 민간 및 요양병원 선발 등
민간 및 요양병원	전환기 치료센터 마련, 서비스 운영 지침 수립, 운영비 및 인건비 일부 부담, 상급종합병원 및 통합돌봄 연계를 위한 담당 조직 마련, 통합돌봄 민간사례관리사 연계
상급의료기관	전원계획 수립(전원 기관 결정), 전원기관과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하여 환자 상태 공유, 회송 필요 시 즉각 수용
시군	전환기 서비스를 받은 주민의 지속 관리(통합돌봄서비스 연계 등)

10) 김용익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죽을 때까지 모시는 것'을 넘어 '치료'와 '기능 증진'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화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unit care'로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김용익, "전국민 돌봄보장을 위한 공공병원의 필요성", 「건강한 도시, 행복한 시민」 발표 자료). 또한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가정의학과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노인환자 77명을 대상으로 요양병원과 연계하여 3개월 내 전환기 의료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시행 전 65%이하였던 퇴원후 가정복귀율이 85%로 상향

11) 나백주을지대학교 교수는 2~6개월 동안 입원 가능하며, 2개월이 지나면 건강보험 수가 삭감이 이뤄지므로 원내 평가(외부 보건소장 및 의사회장 등 전문가와 지역주민 대표 등 참여)를 통해 장기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입원이 가능하며, 수가 삭감분은 경기도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병원의 참여 유도를 제안(경기복지재단 기회경기복지포럼 내부 자문회의 자료, 2024. 6.25.)

II. 누구나 돌봄 발전 전략

퇴원이후 회복기 동안 일상생활 돌봄과 회복을 도와주는 '중간집'사업을 추진하여 단기 회복 지원

- (재원) 도 및 시군비 분담

  - 재활서비스 기간인 3개월까지 도 및 시군이 부담하고, 환자가 연장을 희망할 경우 시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되, 최대 1년을 넘지 않도록 함
  - 연장할 경우 개인이 부담(저소득층 제외)하도록 하여 남용 차단

- 사례 : 일본 오사카시 니시요도 병원

  - 지역통합내과(한국에서는 가정의학과와 비슷함)는 지역의료와 연계하여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병동에서는 각 전문내과와 협력하여 전반적인 신체 및 정신건강을 담당하며 영양관리와 재활도 챙김. 또한 거동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 방문진료와 악성암질환등에 대한 방문형 호스피스도 제공하며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및 보건교육도 담당
  - 6층 건물에 218개 병상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3층을 회복기 병동(전환기 병동)으로 활용 중임. 말기암환자, 골절 등 원래 생활이 곤란한 환자의 기능회복과 퇴원 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와 환자가 한 팀으로 하여 회복에 집중하는 병동으로 운영
  - 지역의료연대센터 사회사업실이 있어서 지역 정부, 지역의사회,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환자에 대해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자원봉사주민모임을 연대체로 구성하고 이들의 기금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었음. 특히 어려운 이웃의 의료비 부담 및 복지혜택에 제도적 커버가 부족한 부분의 내용을 할 뿐 아니라 건강문제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과 건강생활습관 개선 등 참여에 대한 사항도 활발하게 활동

▸ 전략 1-❷: 단기입주형 회복주택(readiness to independent life) 운영[12)]

- (개요) 퇴원이후 회복기 동안 일상생활 돌봄이나 재활이 필요하여 집으로 바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병원과 집의 중간(일명 '중간집')

- (대상자) 퇴원을 앞두거나 퇴원한 지 3개월 이내의 만성복합질환자로서 의사 소견서를 통해 의료중재가 필요하며 동시에 주거 및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장기요양인정 등급 신청 시 병원 퇴원 후 3개월 경과 요구)

- (방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경기주택공사(GH)가 주택공급 → LH 또는 GH와 시군 간 단기입주형 회복주택 관련 계약 → 시군은 단기입주형 회복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서비스계약 최장 6개월) → 서비스 제공

  - 단기입주형 회복지원서비스는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및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방문서비스 확대
  - 단기입주형 회복주택 공급이 어려울 경우 지역사회 시설(폐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12)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의 "경기도형 돌봄 사업 구상"(기회경기복지포럼 내부자문회의 자료)의 자료를 정리한 것임(24. 6. 25.)

II. 누구나 돌봄 발전 전략

은평구 케어비엔비주택은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 적응을 도와주는 주거복지사업

- (인력 구성 및 운영) : 보건의료-복지(돌봄)-요양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 ㉠ 비상근: 전문의(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방문간호사,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
  - ㉡ 상근(24시간): 돌봄인력, 단기회복지원 지원 인력
- (서비스) 의료측면 외 개인 건강 특성에 맞춘 재활훈련,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 + 단기회복지원 실무자를 통한 일상생활 및 필요 서비스 상담
  - 보건의료측면 : 전문의(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수시 상담 / 방문간호서비스 주 2회 방문하여 복약 및 수액처치, 재택 재활서비스 등
  - 주거측면 : 가구별 안심벨 설치
  - 돌봄측면 : 영양지원, 보행훈련, 일상생활 훈련, 자택복귀 훈련 등
  - 집으로 복귀 전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누구나 돌봄과 연계 등) 후 퇴소
- (전달체계 및 역할)

주체	역할
LH, GH	주택공급([LH, GH] - [경기도] 간 주택공급 합의
기초지자체	LH 또는 GH와 시군간 주택공급계약, 입주자 선정 및 단기회복주택 운영 주체 선정, 운영비 및 인건비 부담 사업 담당, 통합돌봄 민간사례관리자와 연계
경기도	단기회복주택 운영 지침 제공, 운영비 및 인건비 일부 부담 등 운영 지원
주거복지센터(도 및 시군)	단기회복주택 운영 지침 마련, 사업 기술 지원 및 평가(위탁) 등 중간지원 역할

- (재원) 도비+시군비 매칭: 경기도와 지자체 50:50
  - 이용자 부담: 기준중위소득 이하 무료, 월이용료 단가 마련 필요
- 사례 : 은평구 케어비엔비(단기 입주형 재활주택)

-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 후 일시 지역사회 적응을 도와주는 주거복지 사업 : 본인이 살던 집으로 안심하고 복귀하여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일상훈련을 지원
- 병원과 집의 중간 시설로 LH와 협약 체결하여 2021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후 종료
- 다가구주택 16호에 호당 약 35㎡(약 10평) 규모, 방 2개, 화장실, 거실 겸 주방 갖춤, 옥상에 재활 운동 위한 시설과 텃밭 조성)
- 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가 순회, 돌봄 인력이 오전 6시 30분에서 오후 9시 30분까지 상주하며 운동, 영양, 이동, 정서 등 지원)
- 독립생활형이 월 42만원, 밀착돌봄형(간병인 24시간 밀착케어)이 월 70만원)

II. 누구나 돌봄 발전 전략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시설보호가 아닌 지역사회보호 도모

▶ 전략 1-❸ : 지역사회기반 '통합재가서비스지원센터' 운영

- (개요) 만성복합질환자에게 주거 및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주야간·단기돌봄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지원센터' 운영

  • 수발이 필요한 경기도민은 약 47만명[1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정 기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은 795개소에 불과

〈표 2〉 경기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주체(2023)

시설	소계	개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재단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기타	주식회사	프렌차이즈
단기보호	16	12	3						1		
방문간호	73	66	-						3	2	2
방문요양	1,618	1,457	33	20	1	9	4	1	36	53	4
주/야간보호	779	633	77	7	1	4	7	2	18	27	3

자료 : 보건복지부(2024). 「노인복지시설 현황」 내 자료 운영주체별 재구성

  •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제23조[14]에 근거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통합한 '통합재가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 (대상자) 재가 만성복합질환자로서 의료 중재가 필요하며, 주거와 돌봄이 필요한 도민, 또는 돌봐줄 가족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단기 보호가 필요한 재가 환자

  • 누구나 돌봄서비스 중 일시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시설로 보내기보다는 지역사회에 있는 통합재가서비스지원센터로 서비스 의뢰하면 일시보호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주간보호,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선택 가능

> 예)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할아버지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시설로 일시보호 조치(누구나돌봄) → 통합재가지원서비스센터를 통해 할아버지는 ① 할머니 퇴원 시까지 단기보호서비스 ② 낮에는 집에서 방문요양서비스, 밤에는 통합재가서비스센터에서 야간보호서비스 ③ 낮에는 통합재가서비스센터에서 주간보호서비스,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익숙한 곳에서 숙면하는 대안을 선택하여 '사람 중심 통합돌봄' 가능

- (방식) 독립건물로 운영 중인 주/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센터를 선정, 2층과 3층에 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방문간호서비스 추가

  • 수발이 필요한 도민이 많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 만큼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며, 별도 추가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에 추가 설치하여 빠른 제도 안착 및 상황 대응력 제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재가센터(남양주와 부천 2개소 운영 중)의 경우 민간과 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통합재가서비스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운, 표준모델을 만들어 민간에 전파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 고려

  • 방문간호스테이션을 두고 24시간 운영, 야간은 간호사 1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호출이 오면 가정을 방문

13) 김용익의 앞의 자료에 따르면 수발이 필요한 인구가 187만 명에 달한다고 하였는데, 경기도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25%)를 적용하여 산출함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에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1. 재가급여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를 제시하고 ③항에 방문요양부터 단기보호까지의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24.1.2. 개정)

II. 누구나 돌봄 발전 전략

일본의 재택종합센터 라꾸라꾸사례는 주간보호, 야간 및 단기보호, 방문간호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

– 사례 : 일본 오사카 니시요도 병원 재택종합센터 라꾸라꾸[15)]

- 일본민의련 소속 일반재단법인 요도가와근로자후생협회에서 설립, 운영
- 층별로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데 1층에는 데이케어 센터, 2층에는 간호소규모다기능거택개호, 3층에는 방문간호 스테이션, 헬퍼스테이션, 재택개호24, 케어매니저 사무실, 장애인케어플랜 사무실 등 모두 7개의 기능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말 그대로 종합센터
- 1층에는 데이케어센터가 자리하고 있고 25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 개호보험(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함)의 적용을 받으며 개호 등급에 따라 자기 부담율이 달라지며 식사 비용은 자기 부담
- 2층에는 간호소규모다기능거택개호라고 부르는 곳으로 등록제(멤버십)로 운영. 데이케어센터처럼 통원도 가능하고 단기간 숙박도 가능하며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기도 함. 1층과 2층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2층의 등록 회원이 아닌 사람이 숙박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자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좀 더 비용을 내고 숙박을 할 수는 있고 숙박 시설은 모두 9실
- 3층에는 방문간호스테이션, 헬퍼스테이션, 재택개호24, 케어매니저 사무실, 장애인케어플랜 사무실 등이 있음
  - 방문간호스테이션에서는 방문 간호사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담당하는 환자 수는 150여 명으로 한달 방문건 수는 1,100여 건이며 24시간 운영. 야간에는 보통 한 명의 간호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호출이 오면 가정을 방문
  - 헬퍼스테이션에서 헬퍼는 우리의 요양보호사 정도로 볼 수 있으며, 26명의 헬퍼(정규직 8명과 비정규직 18명)가 근무하고 있는데 보통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식사, 가사 등을 도와 줌. 헬퍼는 1, 2등급으로 나뉘며 3-4년 정도의 경력을 쌓으면 개호복지사가 될 수 있음
  - 재택개호24의 경우 헬퍼스테이션과 기능은 동일하나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용자가 거의 없음. 헬퍼스테이션은 비용을 1회 얼마로 책정하고 있으나 재택개호24는 월정액으로 책정하는데, 하루에 3-4회 방문하게 되면 본이 부담이 15~3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함
  - 케어매니저는 개인별로 개호 플랜을 세워주는 역할을 함. 케어플랜을 작성해 주고 한 달에 한 번 개호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데 보통 1인당 1.4만 엔 정도로, 20명의 케어플랜을 짜 주면 28만 엔 정도 수익을 올리 수 있고, 이는 전액 개호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본인부담은 없음. 케어메니저 한 명당 한 달에 35명까지 담당할 수 있는데 현재 사무실에는 4명이 근무. 케어매니저는 별도의 자격이 있으며 '위탁개호지원전문원'이라고 부르며, 의사, 간호사 등 의료계통의 자격자 중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으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3층에 장애인케어플랜 사무실이 있는데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담당하는 별도의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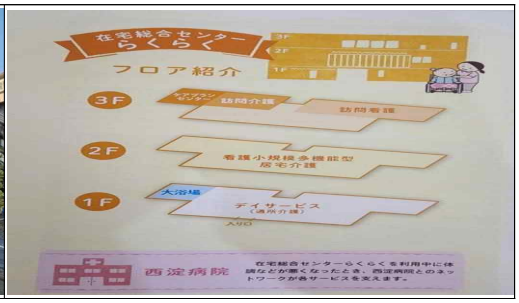

15) 나백주(2024). "주거복지와 건강돌봄", 경기복지재단 내부 발표자료; 백재중의 블로그 자료(https://blog.naver.com/jjbaik99/222980679028)

민간사례관리사를 통합돌봄 민간사례관리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누구나 돌봄 추진 전체 시군에 확대

전략 2: 돌봄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 연속성 제고

▸ 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합돌봄플랫폼 구축과 같은 구조적 측면과 실질적 연계를 위한 인력 확충이 중요

- 읍면동의 발굴 및 접수를 위한 의무방문 후 돌봄욕구조사 및 돌봄서비스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조직과 인력 확보 필요
  - 서울시의 경우는 2022년 261명(사회직 189명, 간호직 72명)을 추가 배치
- 누구나 돌봄사업이 긴급돌봄 내지 틈새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타 돌봄서비스와 연계가 중요하며, 이를 담당할 통합돌봄 사례관리인력이 필요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결과에서 케어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최근 통과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통합돌봄사례관리 기능이 명시되어 있음(법 제14조 ④)

▸ 전략 2-❶ : 경기도 민간사례관리사를 통합돌봄 사례관리 인력으로 전환

- 경기도는 26개 시군에 통합전달체계인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156명의 민간사례관리사가 근무 중[16)]
  - 2023년 9월 현재 26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가 설치 운영 중이며, 156명의 민간사례관리사가 근무(정원 160명)하며, 고용 형태는 정규직 82명(52.6%), 무기직 42명(26.9%), 기간제 29명(18.6%), 시간선택임기제 3명(1.9%)으로 약 80%가 안정적으로 업무 추진
  - 배치는 기본형 네트워크팀(11개 시군) 68명, 확장형 네트워크팀(6개 시군) 63명, 시군(7개) 24명, 읍면동(2개 시군) 5명으로 81.9%가 네트워크팀에서 근무
- 민간사례관리사를 통합돌봄 민간사례관리사로 전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고, 읍면동의 의무방문 이후 발굴된 대상자를 방문, 서비스 욕구 및 위기도 조사하고, 서비스 종결 이후 만족도 조사와 미충족 서비스 연계 등 역할 수행
  - 누구나 돌봄의 돌봄매니저는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사회복지공무원과 보건직 공무원이 담당하며, 신청 접수, 현장방문,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만족도 조사 등 다단계의 역할 수행으로 인해 복합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타 서비스 연계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26개 시군에 배치된 156명의 사례관리 인력을 새로운 역할(통합돌봄 민간사례관리사) 부여 및 사회복지시설 배치 등에 대해 시군과 협의
  - 현재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현 근무지를 그대로 유지하며 시군 및 읍면동에 배치된 인력은 사회복지시설을 근무지로 지정
- 통합돌봄 민간사례관리사는 돌봄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군 및 제공기관과 통합돌봄사례회의를 진행하는 등 향후 지역돌봄법 추진 시 통합돌봄서비스의 핵심 역할 수행
  - 누구나 돌봄사업에 먼저 참여한 시군 중 한 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통합돌봄 민간사례관리사 전환 시범사업'을 2025년에 추진하고, 보완한 후 사업 참여 전 시군에 확대

16) 경기복지재단(2023). 「무한돌봄센터 사업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정책연구보고 2023-12, p. 44

II. 누구나 돌봄 발전 전략

일시적이고 틈새 돌봄의 한계를 타 돌봄과 연계·보완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돌봄의 연속성 확보

▸ 전략 2-❷ : 통합지원으로 충족되지 않은 서비스 보완

- 누구나 돌봄사업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돌봄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해당 사업을 통해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타 사업으로 연계하는 등 통합적 지원

  • 통합돌봄 민간사례관리사는 하나의 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돌봄대상자에게 보건, 주거, 의료, 재활, 영양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누구나 돌봄과 노인맞춤돌봄, 방문간호, 치매안심 등 기존의 공적 돌봄서비스를 연계

-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추가서비스를 연계한 구체적 사례를 보면,

〈표 3〉 누구나돌봄서비스 제공 후 타 서비스로 연계 사례

상황	누구나 돌봄 서비스		연계 서비스
• 위암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서 약 80일간 입원한 50대 A씨는 퇴원을 앞두고 있으나, 혼자 지낼 것이 걱정	• 생활돌봄서비스를 통해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 식사지원서비스를 통해 환자식을 제공받음 • 동행서비스를 통해 병원 진료	⇨	• 찾아가는 경기도돌봄의료센터와 연계, 의료상담 지속 • 45식 지원 이후 복지관 도시락 배달서비스 연계 • 동행돌봄 60시간 이후 일상돌봄과 연계
• 혼자 사는 77세 남성 B씨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최근 편마비 증상이 악화되어 장기요양을 신청함	• 일시보호서비스를 15일간 제공 • 생활돌봄 60일간 제공	⇨	• 15일 후 찾아가는 경기도돌봄의료센터에 연계하여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 재활을 위해 의료원 전환기 치료센터로 연계
• 장기요양1등급을 받은 78세 여성 C씨는 치매증세가 악화되었으나 가족이 모두 직장을 다녀 낮동안 보호가 필요	• 병원진료를 위해 동행서비스 60시간 제공 • 방문요양시간 이후 생활돌봄서비스 60시간 제공	⇨	• 장기요양재택의료서비스를 연계하여 월 1회 의사방문, 월 2회 간호사 방문 연계

- 기존 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부족한 영역을 누구나 돌봄을 통해 충족한 사례

〈표 4〉 타 돌봄서비스를 받은 후 누구나돌봄서비스 연계 사례

상황	제공 받은 서비스		누구나 돌봄서비스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77세 남성 D씨는 혼자서 곰팡이 가득찬 방에서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으로 식사를 해결	• 노인맞춤돌봄을 통해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 • 일상생활지원을 통해 간단한 청소와 반찬을 제공받음	⇨	• 혼자살면서 우울감이 높아져 심리상담서비스를 10회 연결

- 미충족서비스에 대한 연계는 통합돌봄 민간사례관리사와 시군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연계서비스는 해당 제공 기관에서 관리

  • 누구나 돌봄서비스 종결 전 서비스 만족도 조사(통합돌봄 민간사례관리사) 등을 통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미충족 서비스는 시군과 협의를 통해 연계 결정

  • 미충족서비스의 연계 여부는 시군이 결정하며, 이후 미충족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를 관리하며, 서비스 제공내용 등은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공유

  • 타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중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 시군을 통해 통합돌봄 민간사례관리사에게 전달되고, 통합돌봄 민간사례관리사는 의뢰받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욕구 및 위기도 조사를 하여 읍면동에 보고

II. 누구나 돌봄 발전 전략

소소한 돌봄 수요를 표출하여 주민간 거래가 이뤄질 수 있고, 누구나 돌봄사업의 자료와 성과를 축적하는 돌봄플랫폼 구축

전략 3 : 인-앤-아웃 발굴체계 강화

▶ 전략 3-❶(인 바운드 전략)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생활 속 작고 소소하지만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요구하고, 돌봄사업의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국민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면 자원이 빈약(thin)해지고, 주는 자와 받는자를 구분하게 되며, 국가 재정이나 정책 변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욕구의 수준에 따라 국가(공공)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17)]

〈그림 7〉 돌봄수준에 따른 공공과 민간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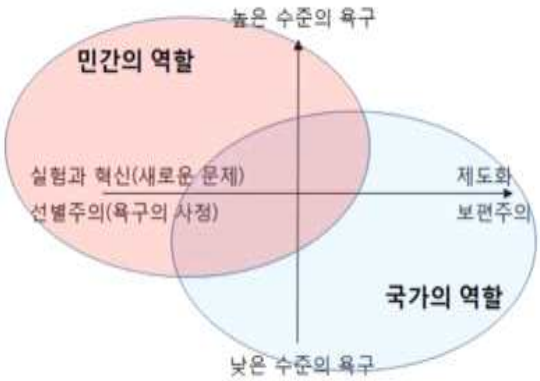

자료 : 최영준(2024). "돌봄수준에 따른 공공과 민간 역할", 기회경기포럼 자료, 경기복지재단

-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키우고 공동체를 키우는 방식을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정부는 수요를 표출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연결될 수 있는 공론장(public sphere)만 마련해주면 됨

- (방식) ① 돌봄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참여하여 정보, 서비스, 자원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돌봄플랫폼" (돌봄거래소)시스템 구축
  - 일상 확인, 간단한 도움과 같은 소소하지만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제공자로서 높은 전문성이 불필요) 공공과 민간, 민간과 민간 간 공생산(共生産)이 가능한 영역
  - 기존 돌봄 외에 도민이 필요로 하는 소소한 서비스를 플랫폼에 직접 제안(도민이 필요로 하는 특화서비스 개발로 후속 사업 진행)
  -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도민은 서비스 제공 내용과 가능 시간을 플랫폼에 등록하면 온라인에서 플랫폼 담당자가 매칭
  - 플랫폼 당당자는 서비스 수요자와 제공자 간 연계 역할 외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밤죄 상황을 스크린하고 가드(guard) 역할 수행
  - 소소한 서비스 제공 실적은 플랫폼에 '토큰'(token)으로 누적되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댓가인 기회소득으로 제공
  - 누구나 돌봄사업은 현재 5개 기본서비스와 2개 확대 서비스 등 7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주민이 원하는 플랫폼을 통해 소소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에 대한 의사(수요)를 표출하여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축적된 수요를 분석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특화사업으로 제도화 가능

- (방식) ② 도민의 소소한 돌봄 수요에 대한 거래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돌봄사업의 자료와 성과를 축적하는 데이터 플랫폼 역할 수행
  - 경기도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통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바, 도민과 민간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논의 집중

17) 최영준(2024). "돌봄수준에 따른 공공과 민간 역할", 기회경기복지 포럼 자료, 경기복지재단

II. 누구나 돌봄 발전 전략

75세 이상 노인을 '의무 방문'하는 발굴주의로 전환하고, 민간의 지역공동체를 활용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집중

〈표 5〉 돌봄플랫폼 이용 단계

(1단계) 의무방문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의 평가 결과, 가족 등 구성원 정보 등록	발굴기관(읍면동, 누구나 의료팀)
↓	
(2단계)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읍면동
↓	
(3단계)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방문 주기, 방문 일정, 서비스 내용 등)을 입력	서비스 제공기관
↓	
(4단계) 제공된 서비스와 대상의 상태 변화 등을 모니터링(통합돌봄사례관리사)하고 제공계획 변경 등 돌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내용 입력	통합돌봄 민간사례관리사 (각 기관 지정자)
↓	
(5단계) 돌봄 완료되면 대상자 만족도 조사하여 타 사업 연계 또는 돌봄 종결(시군과 통합사례회의)	통합돌봄 민간사례관리사

▸ 전략 3-❷(아웃리치 전략) 신청하지 않아도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지 먼저 살피는 '의무방문' 사업 추진하여 발굴주의로 전환

- 현재 누구나 돌봄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접수를 받고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있어 신청주의 견지하고 있으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75세 노인은 '의무방문' 추진하여 선제적 발굴 및 예방적 돌봄사업으로 전환
  - 읍면동은 75세 이상 노인 명단을 작성하여 매일 일정 수를 의무방문, 돌봄선별도구를 활용하여 돌봄필요도 측정하여 대상자 발굴
  - 정부 전산망(행복e음, 건보공단 빅데이터 등)이나 AI말벗서비스 등을 통해 발굴하거나,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병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긴급복지콜센터 등을 통해서 돌봄 중점관리 대상자 명단을 작성
- 의무방문은 읍면동의 돌봄매니저(찾아가는 보건복지팀 2인 1조)가 담당하며, 방문하여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의 통합돌봄 민간사례관리사에게 전달
  - 통합돌봄 사례관리사는 돌봄 욕구 및 위기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읍면동으로 전달하여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의무방문을 위해 민간 자생조직 등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작관이구(作觀異口[18]), 작은 관심이 이웃을 구합니다)'사업을 추진
  - 의무방문을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공공인력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이웃의 어려움을 늘 살피고 주시하는 지역 문화 형성

18) 작관(作觀)은 '잘 관찰하다' '잘 살펴보다' '관찰을 행하다' '행위를 꿰뚫어본다'는 의미로 금강경에 수록된 단어이며(https://blog.naver.com/ldh5111/222938180235), 이구(異口)는 여러 사람의 입, 또는 여러 사람의 말이라는 의미임(다음 한국어 사전)

돌봄조사도구를 타 돌봄과 통합하고, 돌봄 조직 및 인력 확보 등 26년 시행 예정인 '지역돌봄법'에 대비

누구나 돌봄 업무 절차 간소화 및 지역특화 돌봄 추진

▸ 돌봄 신청자의 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 도구를 타 서비스에서 활용하는 도구로 통일하여 업무 부담 완화 도모

- 신청자의 욕구와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며, 이 단계에서 신청자의 기초정보 수집과 적격성 및 심각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누구나 돌봄 초기 판단 및 현장 확인 체크리스트'를 활용

- 기존 돌봄서비스에도 조사 도구가 각기 마련되어 있어 담당자는 도구를 헷갈리거 등 업무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누구나 돌봄 조사 도구를 기존 도구와 유사하게 변경하거나 활용하는 방안 고민

▸ 지역별 여건과 수요가 다르므로 이에 부합하는 '지역 특화'돌봄을 개발, 제공할 수 있도록 누구나 돌봄 체계 개편

- 5대 기본서비스와 2대 확대서비스 체계를 기본서비스+확대서비스+지역특화서비스 등 3대 체계로 전환하여 지역의 돌봄 수요에 대응
  - 돌봄플랫폼을 통해 소소한 서비스 요구가 반복적으로 있을 경우 이를 특화서비스로 제도화 가능

- 누구나 돌봄사업 참여 시군이 15개에서 28개('25)로 늘어날 예정이나,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돌봄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수 있음을 홍보하여 나머지 3개 시군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 개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시행에 대비

▸ 2026년 시행되는 의료·요양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하 지역돌봄법) 대비한 조직과 필요인력 산출 등 전달체계에 대한 건의

- 지역돌봄법은 24년 3월 26일 제정되었고, 2년이 경과하는 2026년 3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부칙 제2조에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명시
  - 법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대상자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 재원조달과 운용, 관려부서와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 등을 포함

- 지역돌봄에 대한 지역계획에 각 사업별로 마련된 전달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기 위한 조직 및 필요 인력을 담기 위한 직무 분석 실시
  -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돌봄 사업 외 경기도 및 각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별로 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합 또는 연계하기 위한 중심조직(focal actor)가 있어야 하며, 각 사업을 연계하기 위한 인력 확충은 필수 조건
  - 각 시군의 상황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조직편제와 인력규모를 산출하기 어려우나, 기본 조건을 토대로 조직개편과 필요 인력 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직무 분석 실시

-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등 유형별 조직개편안과 필요인력 규모를 산출하고, 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직제 및 공무원 정원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_공통사업〉

대상	구분	서비스명	주요내용	대상	서비스 연령
영유아 (~만 6세)	보호 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 시간제돌봄: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 영아종일제돌봄 · 질병감염아동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정부지원, 150% 이상정부 미지원	· 만3개월~12세 · 만 3~36개월 · ~만12세
		공동육아 나눔터	· 공간제공, 육아정보공유, 놀이(프로그램) 지원, 가족품앗이 활동지원	· 해당연령 전체 (소득수준 무관)	· ~18세 미만
	교육 돌봄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 유아학비지원 · 무상급식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입소자	· 만 3~5세
		다함께돌봄사업	· 일시 · 정시돌봄, 방과후프로그램연계, 등하원지원 등	· 해당연령 중 돌봄필요아동	· 만6~12세
	현금성 급여	부모급여	· 만 0세: 월 70만원 현금지급 (어린이집이용시보육료바우처 514천원, 현금 186천원) · 만 1세: 월35만원 현금지급(어린이집이용시보육료바우처 514천원)	· 소득수준 무관	· 만2세 미만 아동 (0~23개월)
학령기 (만6세 ~18세)	보호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 시간제돌봄: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 영아종일제돌봄 · 질병감염아동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만 3개월~12세 · 만 3~36개월 · ~만12세
		공동육아나눔터	· 공간제공, 육아정보공유, 놀이(프로그램) 지원, 가족품앗이 활동지원	· 해당연령 전체(소득수준 무관)	· ~18세 미만
	교육 돌봄	늘봄학교	· 예체능, 심리·정서, AI, 디지털,체육, 문화·예술, 심리·정서, 기초학습 등	· 희망 초등학생 100%	
		다함께돌봄사업	· 임시 · 정시돌봄, 방과후프로그램 연계, 등하원지원 등	· 해당연령 중 돌봄 필요 아동	· 6~12세
		초등돌봄교실	· 오후 시간대 초등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및 학교여건에 따라 저녁시간까지 초등돌봄 교실 연장 운영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가정, 담임 추천대상자 등의 초등학생	· ~36개월
		아동돌봄 공동체	· 돌봄교실 운영으로 안전한 돌봄제공	· 예비초등 ~초등저학년	· ~만12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 체험활동,기초학습 지원, 급식상담, 부모교육 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 조손 · 다문화 · 장애인 · 맞벌이 · 2자녀 이상 가정우선	· 초4~중3
		지역아동센터	· 아동보호, 교육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 초등학생, 중학생	· ~만18세
		고등학교 무상교육/급식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지원 · 무상급식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등에 재학하는 고등학생	· 16~18세
청년기 (만 19세~ 34세)	단순 안부 묻기/ 말벗	가사간병 지원사업	· 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 만 65세미만
	가사 지원	가사간병 지원사업	·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등)		
		일상돌봄 (가사지원)	·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청소,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 제공	· 가족돌봄 청년	· 만 13~ 39세
	식사 .영양 관리	일상돌봄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주 3회 이상)	· 가족돌봄 청년	· 만 13~ 39세
	일상 생활 지원	일상돌봄 (재가돌봄)	·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 및 신체·일상지원 서비스(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활동지원) 제공	· 가족돌봄 청년	· 만 13~ 39세
		가사간병 지원사업	· 신체수발 지원(세면, 식사 등 보조)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 만 65세미만
	사회 참여	일상돌봄 (독립생활지원)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월3회)	· 가족돌봄청년	· 만 13~ 39세

〈부록〉

대상	구분	서비스명	주요내용	대상	서비스 연령
청년기 (만 19세~ 34세)	이동 지원 (통합 돌봄)	일상돌봄 (병원동행)	· 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가족에게이동 및 동행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월 16시간 이내)	· 가족돌봄청년	· 만13~ 39세
		일상돌봄 (동행지원)	· 이용자의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지원 및 업무보조 등 서비스 제공	· 가족돌봄청년	· 만13~ 39세
	신체 지원/ 요양 지원	일상돌봄 (간병교육)	·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총8회)	· 가족돌봄청년	· 만13~ 39세
		가사간병 지원사업	· 신변활동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 운동 보조 등),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 만 65세 미만
	건강 생활 지원	청년신체 건강증진서비스 (청년지투사업)	·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정기적 운동 지원,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자세·체형 교정	· BMI(체질량) 지수가 23이상 18.5 미만인 과체중 또는 저체중청년	· 만19~ 34세
	마음 건강 지원	일상돌봄 (심리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월 4회)	· 가족돌봄청년	· 만13~ 39세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지투사업)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10회기)	· 소득기준 없음 · 1순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 청년	· 만19~ 34세
	여가 관리	일상돌봄 (휴식지원)	· 돌봄대상가족단기 시설보호 지원 (월 최대 3일)	· 가족돌봄청년	· 만13~ 39세
중장년기 (35세~ 64세)	단순 안부 묻기/ 말벗	가사간병 지원사업	· 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 만 65세미만
	가사 지원	가사간병 지원사업	· 청소, 식사준비 등 가사지원		
		일상돌봄 (가사지원)	· 서비스 제공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청소, 식사 준비,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 제공	· 돌봄필요중장년	· 만 40~64세
	식사 ·영양 관리	일상돌봄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 돌봄필요중장년	· 만 40~64세
	일상 생활 지원	일상돌봄 (재가돌봄)	·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 및 신체·일상지원 서비스(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활동지원) 제공	· 돌봄필요중장년	· 만 40~64세
		가사간병 지원사업	· 신체수발 지원(세면, 식사 등 보조 등)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 만 65세미만
	사회 참여 (사회계 향상)	일상돌봄 (소셜다이닝/ 교류증진지원)	·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월 4회)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월 4회)	· 돌봄필요중장년	· 만 40~64세
	이동 지원 (통합 돌봄)	일상돌봄 (동행지원)	· 이용자의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지원 및 업무보조 등 서비스 제공	· 돌봄필요중장년	· 만 40~64세
		일상돌봄 (병원동행)	·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보조, 병원 접수· 수납 등 지원 (월 16시간 이내)	· 돌봄필요중장년	· 만 40~64세
	신체 지원/ 요양 지원	가사간병 지원사업	· 신체수발 지원(세면, 식사 등 보조 등), 신변활동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 ~ 만64세
	건강 생활 지원	일상돌봄 (건강생활지원)	·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월 8회)	· 돌봄필요중장년	· 만 40~64세
		가사간병 지원사업	· 신변활동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 ~ 만 64세
	마음건강지원	일상돌봄 (심리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 돌봄필요중장년	· 만 40~64세

대상	구분	서비스명	주요내용	대상	서비스 연령
노년기(65세~)	단순 안부 묻기/말벗	노인맞춤돌봄(안전지원)	· 방문, 전화, ICT를 통해 안전·안부 확인, 정보제공, 말벗서비스 제공	· 돌봄서비스가필요한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유사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자	· 만 65세~
	가사 지원	노인맞춤돌봄(일상생활지원)	·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식사 및 청소관리)을 제공하는 서비스	· 돌봄서비스가필요한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로서 유사중복사업 에 해당되지 않는자	· 만 65세~
	안전 보호)	노인맞춤돌봄(안전지원)	· 생활안전점검	· 돌봄서비스가필요한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로서 유사중복사업 에 해당되지 않는자	· 만 65세~
	일상생활 지원	노인맞춤돌봄(생활교육)	·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 돌봄서비스가필요한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로서 유사중복사업 에 해당되지 않는자	· 만 65세~
	사회참여(사회관계향상 지원)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 대인관계 증진, 소규모 지역밀착형 문화생활 지원, 지역자원 활용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욕구를 가진 지역사회 노인	· 만 65세~
		노인맞춤돌봄(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돌봄서비스가필요한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로서 유사중복사업 에 해당되지 않는자	· 만 65세~
	이동 지원(통합돌봄)	노인맞춤돌봄(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한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	· 만 65세~
	주거 안전	노인맞춤돌봄(주거개선 연계)	· 주거위생, 주거환경개선 지원	· 돌봄서비스가필요한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유사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자	· 만 65세~
	신체 지원/요양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 방문요양/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서비스	·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	· 만 65세~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 경도인지장애 관리/연계, 노인성질환 관리/연계 등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욕구를 가진 지역사회 노인	· 만 65세~
	의료 지원	장기요양서비스(방문간호)	· 방문요양/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서비스	·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	· 만 65세~
	건강 생활 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건강증진서비스)	·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연계 및 노인성 질환 관리, 연계 등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욕구를 가진 지역사회 노인	
		노인맞춤돌봄(생활교육)	·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로서유사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자	· 만 65세~
	마음 건강 지원	노인맞춤돌봄(특화서비스)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로서유사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자	· 만 65세~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정신적위기관리)	· 알코올의존, 우울, 학대 등의 정신적 위기 관련 관리능력 향상 및 관련기관 연계 등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욕구를 가진 지역사회 노인	· 만 65세~
	위기상황 및긴급 지원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 지역사회 노인의 권리옹호 및 자연재해, 응급상황 등 긴급지원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욕구를 가진 지역사회 노인	· 만 65세~

〈돌봄서비스_시범사업〉

사업명		서비스명	주요내용(비용포함)	대상	신청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시설급여 이용 중인 노인 제외	·시군 관할 운영센터 및 재택 의료센터
재가의료 시범사업		의료	· 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필요도 평가를 통해 케어플랜 수립 · 의료·복지·영양 상담, 모니터링 제공 · 케어플랜 수립(85,300원) · 모니터링(12,400원/회) · 집중교육·상담(21,300원/회)	·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 (시범사업 지역) 부천, 성남, 안산, 파주, 남양주, 포천, 양평	·협업병원 (병원협업 통한 퇴원자 선정)
		돌봄	· 요양보호사 방문을 통해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 제공 · 시간당 20,690원 * 야간 및 주말 30% 가산		
		식사	· 복지관, 민간 도시락 제공기관 등 활용, 식사·밑반찬·식재료 제공 · 일반식 8,500원/1식 · 특수식 9,500원/1식 · 밑반찬·식재료 42,000원/1주·		
		이동지원	· 교통비 카드 지급, 택시업체 계약을 통해 이동시(외래진료 등) 교통비 지원 · 19,000원/회		
		기타(선택급여)	·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기구, 안전망 설치, 복지용품, 필수생활용품 등 · 연간 200만원 이내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부천	방문의료	· 통합건강돌봄센터,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 방문약료서비스, 우울관리지원사업	·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 ①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 -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②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 급성기 병원, 요양병원에서 퇴원 후 2주 이내의 환자 - 의료와 돌봄서비스 제공이 임시 또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노인 ③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등급외자(A,B) -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 판정 전이거나, -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거동이 불편하여 주변의 돌봄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노인 ④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우선관리 대상자 비율(①-③ 순으로 확보) 60% 이상 ①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40% 이상 ② 퇴원환자 10%, ③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 및 장기요양 등급외자(A, B) 10% · (시범사업 지역) 부천, 안산	· 부천북부장기요양운영센터 · 안산장기요양운영센터
		지역복귀	· 찾아가는 통합돌봄상담서비스, 급성기병원 통합돌봄상담인력 파견, 퇴원환자 단기회복 중간집 운영		
		생활지원	·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통합돌봄 제공, 틈새돌봄지원,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주거지원	· 안전홈케어서비스, 케어안심주택지원		
		돌봄안전망	· 돌봄서비스지원, 커뮤니티 케어센터 운영, 지역리더 양성 및 돌봄활동, 스마트지역사회통합돌봄		
	안산	방문의료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산형 방문주치의 사업, 안산형 한의 방문 진료 사업, 안산형 약사 방문복약지원 사업		
		퇴원환자재가복귀지원	· 안산형 퇴원환자지원 사업		
		생활지원	· 방문가사지원서비스, 동행이동서비스, 맞춤형 영양서비스		
		기타	· 주거지원(LH노인케어안심주택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 4권역 거점형 통합돌봄 돌봄매니지먼트		

〈돌봄서비스_시군별 특화사업〉

지역	구분	서비스명		주요내용(비용포함)	자격기준	신청	문의
수원	새빛돌봄	방문가사		· 신체활동 지원 1시간 24,120원 · 가사지원 1시간 24,120원 · 대청소(정리정돈) 상담 후 결정 · 소독·방역 1회 100,000원	· 수원시민 누구나 · 수급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연간 100만원 돌봄비용 지원,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자부담 이용 가능	· 오프라인 : 수원시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새빛톡톡	·휴먼콜센터 : 1899-3300 ·돌봄정책과 : 031) 228-2746
		동행지원		· 병원동행 1시간 16,200원 · 일상생활 동행 1시간 16,200원			
		심리상담		· 성인 상담 1회기 80,000원 · 중독관리 상담 1회기 60,000원 · 아동·청소년 상담 1회기 60,000원			
		일시보호		· 단기보호 1일 70,500원 · 반려동물 일시보호 1박 35,000원 ~ 50,000원(반려동물 일시보호 차량이송, 입질 비용 20,000원 별도)			
		식사배달		· 시범 운영중 (파장동, 조원1동, 세류2동, 서둔동, 화서1동, 우만1동, 매탄4동, 원천동)			
시흥	시흥돌봄SOS센터	7대 단기돌봄서비스	생활돌봄	· 돌봄 대상자 가정방문 및 수발	· 시흥시민 누구나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규정 ① 현재 당사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세 가지 적격 판단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 중위소득 120% 초과 ~ 150%이하: 50%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 자부담	· 오프라인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방문 신청 · 온라인 : 경기민원24, gg24.gg.go.kr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내 · 시흥돌봄SOS센터/ 시흥시 복지정책과 : 031) 310-3568, 3569
			동행돌봄	· 필수적 외출활동 지원			
			주거안전	·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보수, 대청소, 방역			
			식사지원	· 기본적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			
			일시보호	· 단기간 시설입소			
			재활돌봄	· 일상생활 수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심리상담	·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제공			
		6대 중장기돌봄	안부확인	·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역 응급안전서비스 및 지속적 안부확인 프로그램 연계	· 정기간 지속적 개입과 관리 차원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시흥돌봄SOS센터 수가 사업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돌봄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건강지원	· 영양·보건·재활욕구를 가진 이용자에게 지역 내 보건소 및 협력 의료기관 등 다양한 건강돌봄서비스 연계			
			돌봄제도	· 장기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욕구에 맞는 돌봄제도 연계			
			사례관리	·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로 장기적인 개인계획과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관리 연계			
			긴급지원	· 긴급·위기로 현금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상황에 맞는 긴급지원기금 연계			
			주거편의	· 주거환경개선 사업(청소, 방역서비스 등), 주택개선 사업(간단 집수리 등)			